

20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제10차 순천개분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5. 10. 28.(화) 14:00 ~ 16:3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중회의실)
- 출석위원: 김기수(위원장), 강동진, 김종현,
김태일, 목수현, 송석기, 이광표,
이상희, 이혜은, 최선주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유 산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제10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내 조명시설 설치	(공 개)
2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미디어아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조성	(공 개)
3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4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공 개)
---	-------------------------------	-------

심 의 사 항

1.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내 조명 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내 조명 시설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원 진해우체국 전면 중원로터리의 교통섬(보호구역, 1구역)에 성탄트리 및 조명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2) 대상문화유산 : 창원 진해우체국(사적 제291호 / 81.09.25.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일원
- (3) 신청내용 <조명 시설 설치>
 - 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9 등(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1구역)
 - ※ 1구역 허용기준 : 평지붕 8m / 경사지붕 11m 이하
 - 내용
 - 허가기간 : 2025. 11. 1. ~ 2026. 3. 15.
 - 시설물 내용 : 10m트리 1개소, 6m트리 2개소, 4m트리 2개소, 2m트리 20개소, LED반딧불이 200개, 스트링라이트 20개
 - ※ (보호구역 내) LED반딧불이 50개, 스트링라이트 2개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위원 10명 / 원안가결 10명

2.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미디어아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미디어아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에 강화군의 역사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사업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프로젝터 함체 등 미디어아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과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강화군수

(2) 대상문화유산 :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2001.1.4. 지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창리 27번길 10

(3) 세부내용

○ 미디어아트 조사(照射)(국가지정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 조사범위 : 강화성당 건물 부분(약 160㎡), 담장 및 석축 부분(약 350㎡)

구분	당초	변경
상영주기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원 내 분수대 운영시기와 동일)	매주 주말(금,토,일) (부활절 전후 일주일간 제외)
상영시간	19:30~21:30(일몰 이후 예정)	변경없음

○ 기반시설 설치(제1구역)

-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 405 용흥궁공원

- 설치내용

구분	당초	변경
미디어아트시설	· 프로젝터 함체 1개(3.1m*3.1m*5m(H)) · 강화성당 건물 및 담장 조사	· 프로젝터 폴대 1대(D318mm*5m(H)) · 강화성당 건물 및 담장 조사 · 프로젝터 외함 (350mm*1063mm*828) · 강화성당 남측 진입계단 조사
조명	· 수목투사 레이저 조명 25개 · 조명형 조형물 3개, 조명형 의자 8개	변경없음
분전함	분전함 1개	변경없음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미디어아트 시설의 구체적인 사양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검토·승인받도록 함

○ 출석위원 10명 / 조건부 가결 9명, 제척 1명

3.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 주민의견 수렴 실시 : 2025.06.25. ~ 07.15. (21일간 / 의견 없음)
- ※ 사적 「서울 남현동 요지」 등 1건 : 사적분과위원회 검토(‘25.08.13.) ‘원안가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 대상 문화유산

연번	종목	문화유산명	소재지	지정일
①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3번지	1977.11.22.
②	사적	서울 남현동 요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1외	1976.04.10.

(3) 조정 취지

- 국가유산 규제혁신 일환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역사유적정책과) 후, 조정안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제출
 - 문화유산별로 고시되어 있던 허용기준을 중첩된 구간에 대해 경관 연속성 및 주변 건축 현황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공통사항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고시
- (4) 세부 내용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경관관리가 충족되는 1064-7대 도로 건너편 대지는 ‘당초 4구역(평지붕 23m, 경사지붕 26m)→ 3구역(타법처리)’ 조정
- 구역별 설정기준(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고도제한’, 3구역 ‘타법처리’)에 따라 표기하고 공통사항 조정 반영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위원 10명 / 원안가결 10명

검 토 사 항

4.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25. 4.1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5. 6.30./ 8. 5.)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마포구청장(소유자 동의)
- (2) 대상문화유산
 - 문화유산명칭(안) :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000번지
 - 소유자 : 박OO 외 2명
 - 수량 : 토지 1필지(573.6㎡), 건물 2동(연면적 785.83㎡)
 - 건립시기 : 2002년 신축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건축규모 : 건축면적 307.57㎡, 연면적 649.75㎡
 - 1동 사저: 656.22㎡(1층 196.43㎡, 2층 215.36㎡, 지하 244.43㎡)
 - 2동 사무동: 129.61㎡(1층 11.22㎡, 지하 118.39㎡)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등록범위: 동일한 필지에 있는 건축물 2동(토지 포함)
 - 등록명칭: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 필수보존요소: 대문(문패 포함), 2층 공간 전체 권고
- 출석위원 10명 / 조건부 가결 10명